#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33 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조승환·안철수·이성권

김승수 · 김성원 · 김종양

인요한 • 유용원 • 김재섭

권영진 · 최은석 · 나경원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내·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,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,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, 장기적인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 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##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 중 "국세 체납처분"을 "국세강제징수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3조(위탁교육훈련) ① ~ ④ 제13조(위탁교육훈련) ① ~ ④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 · 감독을 위 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 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(「보험 업법」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) 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 -국세강제징수---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----. 이 경 다. <후단 신설> 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

<u>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</u> <u>탁한다.</u>